

- 역사내 구청 현장민원실 설치현황
- 사고(장애) 발생원인 분석자료
- 사상사고 원인분석 분석보고서
- 직원 승진기준 등 관련자료
- 사장 취임후 지시한 수입증대 사업내용과 구체적인 추진실적
- 폐전동차 매각실태(최근 5년간)
- 폐침목 매각실태(최근 5년간)
- 2호선 전동차 외부광고 계약단가 조정 관련 자료
- 동호철교 정밀안전진단을 갑자기 실시하게 된 관련자료
- 당산철교 교체공사의 설계변경 현황 및 증액사유에 대한 자료중 설계변경 금액에 대한 세부자료
- 환기구, 차수문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3회에 걸친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내용과 조달청과 오간 공문서 사본
- 버스정류장 이전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건의한 문서사본
- 보육시설 운영현황 자료
- 동호철교 보수·보강 관련자료
- 승차권 위탁판매 현황 및 문제점
- 곡선부 교각공사와 관련하여 대한토목 학회에서 보고한 연구보고서
- 군자기지 등 15개소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자료
- 지하철공사 총직원 대비 남·여비율 현황
- '99년도 잡상인 단속요원수와 단속실적
- 현대, 신세계 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지하보상 추진계획" 세부 추진방침서 사본
- 마. 도시철도공사
 - 5, 8호선 전동차 중정비 수의계약 입찰고시, 입찰결과 결재, 수의계약 방침, 계약서 사본
 - 노사관계와 관련
 - '98, '99 이사회 개최현황 및 심의내용
 - 한국전과관리국과 사용료 협정·징수내역
 - '97~'99 경력직 채용현황(전기관의 보직 및 전공·현보직)

- 단계별 개통에 따른 인력 충원계획
- 단계별 노사관련 예산
- '99(현재까지)년도 공사의 홍보예산과 지출내역
- 정보화 사업관련 '98~'99자료
- 현대건설측과 소송관련 서류 일체
- 환기구 인상 관련 역별 공사내역 자료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86

1999년 12월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1999년 12월 2일
- 상정일자 : 제17회 정기회 제7차 환경수자원위원회('99.12.27)

2. 제안설명요지(환경관리실장 김우석)

- 과거 우리 나라는 60~70년대의 경제개발 연대를 거치면서 성장제일주의, 개발우주의 정책으로 서울의 환경도 또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
-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만 다음세대의 "삶의 질"까지도 고려하는 시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UN경제사회이사회 산하위원회인 국제연합지속발전위원회(UNCSD)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 새로운 위원회를 다시 만들기보다는 그 동안에 환경정책의 심의·대안제시 및 환경감시 등의 기능을 수행해 온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기존의 기능과 함께 시정의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의 수립, 환경보전과 개발의 통합·조정 및 「서울의 제21」의 실천과 이행상황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자
- 본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음.
-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 1998년 7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로부터 서울시 지속발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건의가 있어

○서울시에서는 위원회의 신설보다는 녹색 위에서 그 기능을 수행함이 바람직하므로 그에 따른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음.

○그에 따라 녹색위와 서울시가 함께 전문가간담회('99.5.4) 및 시민토론회('99.6.1.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자 9명 등 100여명 참여) 등을 거쳐 조례개정 방향을 정하고

○지속발전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소위원회(위원장 박영숙외 6명)를 구성하여 5차('99.8.25, 9.1, 9.29, 10.15, 11.5)에 걸친 회의와 토론 및 수정작업을 통해 본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녹색위 집행위원회에서 심의·검토한 바 있음.

○또한 금년 11월 30일 서울시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금번 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음.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위원회에 「지속가능성평가 및 서울의제21 실천 기능을 부여」하여 시정의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의 수립 및 친환경적 지침제시, 시장이 부의한 주요정책·계획·제도 등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서울의제21의 실천 및 추진상황 점검, 자치구 지방의제21 추진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음.

○둘째, 위원장을 현행 「위촉위원장 1인」에서 「시장과 위촉위원 2인(시민대표, 기업대표)」의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구성은 현행 「위촉위원 100인 이내」에서 「시의 관련 실·국장을 포함한 100인 이내」로 변경하여 민·관·기업의 파트너십을 기초로 실천력·추진력을 제고하도록 하였음.

○셋째, 위원회 조직을 현행 「집행위원회 및 정책분과, 시민참여분과, 환경오염감시분과」에서 「집행위원회 및 서울의제21 실천협의회와 지속발전정책분과, 환경홍보교육분과」로 개편하였음.

○넷째, 위원회의 의견이 시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와 분과위원회에 필요시 관련과장을 지명위원으로 참여시키고, 기존의 사무국을 폐지하고 위원장이 사무담당위원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

를 처리토록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토록 하였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남중)
(총괄부문)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환경정책 수립과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하여 그 기능을 수행해 온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략의 수립, 환경보전, 서울의제21의 실천 및 그 이행상황 점검 등 그 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시정구현은 물론,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 하려는 것임.

(세부사항)

○현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서울시의 환경정책심의, 대안제시 및 환경오염감시활동 등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95년 11월에 100명이내 위촉위원으로 설치되어 현재 환경전문가, NGO대표, 언론인, 시민 등 67명 위원이 정책, 시민참여, 환경오염감시 등 3개 분과위를 조직·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의제21 작성 및 추진, 공모사업, 환경개선사업 등 주요활동을 하여 왔음.

○동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구성·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즉 공무원의 참여배제로 본래의 심의·자문 역할 미흡, 「서울의제21」 추진을 위한 실천조직 부재로 추진미흡 등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요구되어 새로운 기구의 신설보다 현재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지속가능한 평가, 자문의 기능을 부여하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됨.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현행 「위촉위원장 1인」에서 「시장, 시민대표, 기업대표 등 3인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촉위원 100인 이내」에서 「시의 관련 실·국장을 포함한 100인 이내」로 하며, 조직은 현행 「집행위원회, 정책분과, 참여분과, 감시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 서울의제21실천협의회, 지속발전정책분과, 홍보·교육분과」등의 체제로 확대개편함으로써 실천 기능을 갖춘 추진력있는 분과위로

구성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는 환경의 보전 또는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의 협의회 및 2개의 분과위원회 정원의외에 별도정원의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안 제8조의2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을 근거로 기타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됨.

○ 제1조(목적)에 환경오염 감시활동이 주요 목적중의 하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기능중 일부로 되어 환경오염 감시 활동의 축소나 경시 우려가 있고, 집행위원회 구성인원 25명중 당연직위원으로 시공무원 7명이 자동적으로 포함하게 되어 집행위원회가 서울시정부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 기존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설치된 기본정신이 시민참여·자율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됨.

○ 동 조례개정안이 11월 20일~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1건의 의견도 없었다는 점과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여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널리 듣도록 한다는 점에서, 또한 위원장 3인 공동제로 되어 책임소재의 불명확, 위원장간의 권한·조정상의 문제, 사무담당위원의 실질적인 유급직화 등은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임.

-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소위원회 심사보고요지 : 없음(미구성)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서울의제 21의 실천 및 이행상황 점검 등 국제연합 지속발전위원회의 활동과 연계하여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녹색서울시민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지속가능"이라 함은 지역개발 사업 등을 경제적 효과·사회적 형평 및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함으로써 다음세대의 삶의 질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시정을 위한 보전과 개발의 통합 조정에 관한 방향제시 및 자문
2.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여한 주요 정책·계획·제도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3. 서울의제 21의 실천 및 이행상황 점검, 자치구의제 21 추진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4. 환경개선·보전 프로그램 개발, 환경교육·홍보, 환경 감시활동 등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3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관리실장·교통관리실장·시정기획관·산업경제국장·도시계획국장·건설국장·주택국장과 환경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각각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 2인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자는 시민을 대표하는 자 1인과 기업을 대표하는 자 1인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부위원장 3인과 감사 2인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부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의제 21실천협의회 회장과 2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집행위원회)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